



일본의 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돈육 (豚肉) 부문 -

김 해 수 역

1. 근거법규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1961년 11월 1일 법률 제183호)

2. 목적

돈지육 가격이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안정기준 가격을 밑 돌았을 때 축산진흥사업단이 지정 시장 등에서 돈지육(성령규격: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부령 규격)을 매입하여 저장하고, 또 돈지육 가격이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안정상위가격을 상회할 때 시장 등에 저장한 돈육을 매도(방출)하는 등 수급조절에 의해 돈육가격의 안정을 도모함.

3. 제도의 구성

(1) 실시기관 : 축산진흥사업단

(2) 매입과 매도의 기준

안정가격대를 설정 가격하락시에는 안정기준

가격으로 매입하고 안정상위 가격을 넘었던가 또는 넘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매도함으로써 가격변동폭을 축소한다.

(3) 매입방법

중앙도매시장(농림수산대신에 의해 지정된 일부 지방 조례시장을 포함) 및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사업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행하여지나 후자에 대하여는 생산자단체의 조절판매계획(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요함)의 대상으로 된 것에 대하여 매입한다.

대상 : 돈반도체 지육 성령규격

(4) 매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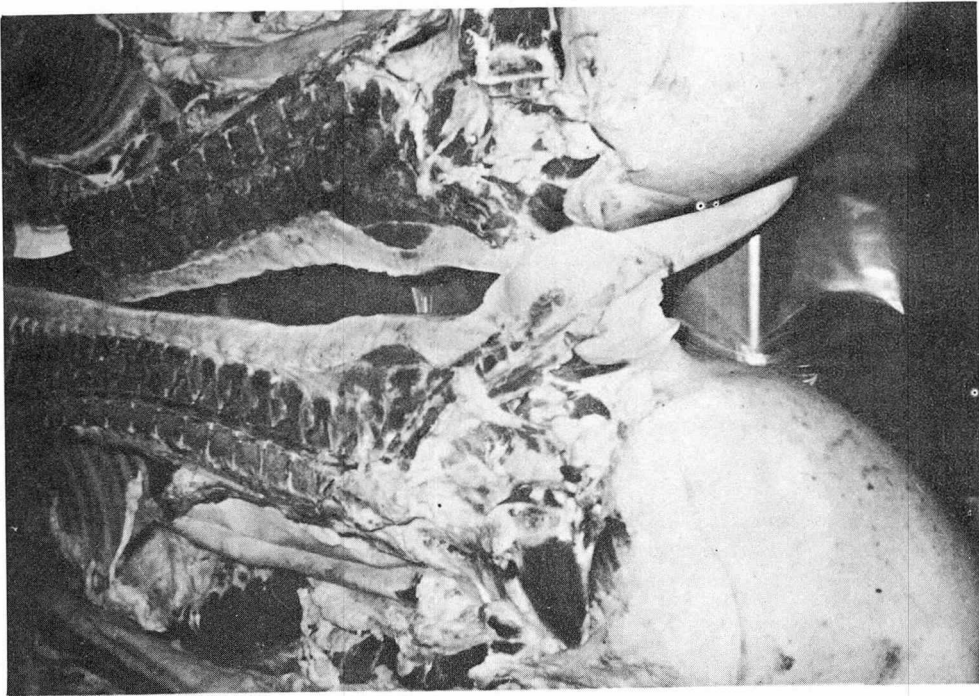
원칙으로는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의해 매도한다. 단, 이 방법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매도한다.

(5) 매입과 매도가격

(가) 가격산정방법

⊙안정기준 가격

$$P_1 = \{(P_0 \times I \times \alpha) \times m + K\} (1 - V)$$



4. 안정가격의 추이

〈표〉 일본 돈육의 안정가격 추이

(단위 : 엔/kg)

구	분	'80	'81	'82	'83	'84	'85	'86	'87	'88
박	안정기준가격	588	600	600	600	600	600	540	455	410
피	안정상위가격	764	779	780	780	780	780	760	645	580
탕	안정기준가격	547	558	560	560	560	560	500	425	380
박	안정상위가격	711	725	725	725	725	725	705	600	540

◎안정상위 가격

$$P_1 = \{(P_0 \times I \times \alpha) \times m + K\} (1 + V)$$

P_1 = 구하는 가격

P_0 = 기준기간(전5회)에 있어서 육돈농가 판매 가격

I = 기준기간에 대한 가격결정년도의 돈육생산비 지수

α = 가격결정년도의 돈육수급조절계수

$$\alpha = 1 + \frac{Q_1 - Q_A}{Q_A} (r)$$

Q_A = 당년도 돈육추정 수요량

Q_1 = 당년도 추정 공급량

r = 가격의 공급 탄력치

m = 전 5개년에 있어서 도매가격(지육)과 농가판매가격(생체)의 관계식에 의한 환산계수

V = 돈지육 도매가격의 변동계수 資料

